

이스트스프링 개인 신종 MMF 제1호[국공채]

[펀드코드: 36654]

투자 위험 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 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국공채 및 단기금융 상품 등에 투자하여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원본손실위험,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위험, 시장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이스트스프링 개인 신종 MMF 제1호[국공채]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p>1. 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시행령 제119조1항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및 해당 법인에의 예치(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 한함),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를 포함. 이하 "국공채 등"이라 함]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 비교지수(벤치마크)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비교지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p> <p>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p>2. 투자전략</p> <p>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시행령 제119조1항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및 해당 법인에의 예치(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 한함),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를 포함. 이하 "국공채 등"이라 함]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주요 운용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투자신탁의 특성에 충실한 체계적인 운용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된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한 편입자산의 만기구조 설계 ▪ 국공채 등 유동성이 높고 신용위험이 낮은 자산을 중심으로 한 펀드운용 ▪ 최상위 신용등급의 은행채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률 제고 ◆ 포트폴리오 구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 등 중심의 투자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 투자신탁의 만기를 고려한 편입자산의 만기구조 설계 ▪ 최상위 신용등급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자산(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및 단기대출 등) 운용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없음	0.3975%	0.26%	0.24%	41	84	130	226	509
투자비용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0.2675%	0.13%	0.25%	28	57	88	154	347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19.07.01 ~ 20.06.30	최근 2년 18.07.01 ~ 20.06.30	최근 3년 17.07.01 ~ 20.06.30	최근 5년 15.07.01 ~ 20.06.30	설정일이후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C)(%)	2013/10/16	0.98	1.17	1.15	1.12	1.51
	비교지수(%)	-	-	-	-	-	-
	수익률 변동성(%)	0.03	0.04	0.03	0.03	0.03	0.03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단기금융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유라	1991	책임 (대리)	-	-	-	-	1.37%	1.5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주요 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하락에 따른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 등을 자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2영업일(D+1)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s://www.eastspring.co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대표번호: 02-2126-3500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www.eastspring.com.kr)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0년 8월 7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s://www.eastspring.com/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및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table border="1"> <tr> <td>수수료후취(S)</td><td>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후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td></tr> <tr> <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 <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able>	수수료후취(S)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후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수수료후취(S)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후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판매경로									
기타	<table border="1"> <tr> <td>개인연금(P2)</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랩(W)</td><td>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개인연금(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 2 부 11. 매입, 판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내 가.(2) 종류별 가입자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table border="1"> <tr> <td>수수료후취(S)</td><td>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후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td></tr> <tr> <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 <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able>	수수료후취(S)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후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수수료후취(S)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후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판매경로									
기타	<table border="1"> <tr> <td>개인연금(P2)</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랩(W)</td><td>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개인연금(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 2 부 11. 매입, 판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내 가.(2) 종류별 가입자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s://www.eastspring.co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s://www.eastspring.com/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s://www.eastspring.com/kr>)